

◎법무부령 제1112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4월 13일

법무부장관 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을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것을” 을 “것(특수매체기록의 경우 복제·인화를 포함한다)을” 로 한다.

제3조 중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를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열람·등사” 를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사” 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 을 “소송대리인,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제6호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3항” 을 “제4조제1항·제3항(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전항” 을 “이 조 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본문 중 “별지서식” 을 “별지 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등사(복제·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 를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 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1. 피고인
2. 피고인의 변호인
3.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6.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열람·등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u>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1의2. ~ 3. (생략)</p> <p>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기는 <u>것</u>을 말한다.</p> <p>5.·6.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내사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 중지·공소보류사건기록, <u>향고·재향고기록을 포함한</u></p>	<p>제2조(정의) ----- ----- -----.</p> <p>1. ----- ----- ----- <u>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u>-----.</p> <p>1의2. ~ 3. (현행과 같음)</p> <p>4. ----- ----- ----- <u>것 (특수매체기록의 경우 복제·인화를 포함한다)을</u> -----.</p> <p>5.·6.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 ----- ----- ----- -----</p>

다), 종결된 진정·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 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② (생략)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사-----

제4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송대리인,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제6호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⑤ (생략)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생략)

② 검사는 열람·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① ~ ④ (생략)

⑤ 수수료는 별지서식의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수수료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준수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제1항·제3항(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 제1항-----

-----.

제8조(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별지 서식-----

-----.

는다.

1. 피고인

2. 피고인의 변호인

3.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4.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

6.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 하려는 것임.